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9.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14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0. 5.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
- 나. 상정의결
 -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김희주)

-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으로 280억원 편성 예정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9.11.~9.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2020.2.4.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이 2021.2.5.부터 시행되어 현재 제29조¹⁾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을 할 수 없는 바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 구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직면한 우리 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출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민간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휴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2020.4.2.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²⁾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 용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업 피해가 많아 폐업위기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제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

[본조신설 2020. 4. 2.]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경영안정 지원)제5호의 신설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3)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경영안정 지원 중 ‘영업을 위한 비용’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한 바 ‘임차료지원’ 이나 ‘휴업지원금’ 과 같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지원사업을 직접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아울러 제2조4)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폐업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4
----------	-----

제출년월일 : 2020. 10. 5.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지역경제과

1.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으로 280억원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9.11. ~ 2020.9.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

2. 비용추계의 전체

○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2020.9.1. 이전 창업한 연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 당 70만원(1회 지급)
- 소요예산 : 28,000백만원(40,000개소 × 70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 년)	2차연도 (2022 년)	3차연도 (2023 년)	4차연도 (2024 년)	5차연도 (2025 년)	합계
세입(a)	-	-	-	-	-	-
세출 (b)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28,000,000	-	-	-	-	28,000,000
□ 총 비용(a-b)	-28,000,000	-	-	-	-	-28,0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1 년)	2차연도 (2022 년)	3차연도 (2023 년)	4차연도 (2024 년)	5차연도 (2025 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	-	-	-	-	-
구비	28,000,000	-	-	-	-	28,000,000
기타	-	-	-	-	-	-
합계	28,000,000	-	-	-	-	28,000,000

5. **작성 자** :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용민 (02-3423-5496)